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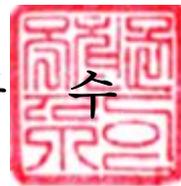
옥천군 공고 제2019 - 608호

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0일

옥 천 군 수



1. 자치법규명: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학과성적 우선주의로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이 제한되고 자유학년제 도입 등 성적 외 활동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장학금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저소득층 중·고등학생들의 성취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급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(안 제2조)
- 군내 거주하는 주민을 군내 주소를 둔 자로 정비 (안 제7조)
- 장학금 지급기준을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는 자로 변경 (안 제8조)

4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옥천군수(참조 : 주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un12345@korea.kr
- 2) 주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
- 3) 팩스 : 043-731-1985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(전화 043-730-3311, 331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임

-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6항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거주하는 주민”을 “주소를 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”를 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고, 장학생 선발기준,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장학금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<u>수급자</u>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.</p> <p>7. “<u>수급자</u>”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</u> -----.</p> <p><삭 제></p>
<p>제6조(대상사업) 제4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수급자</u>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6조(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</u>-----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지원대상)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<u>거주하는 주민</u> 또는 군내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7조(지원대상) ----- -----주소를 둔 사람----- -----.</p>
<p>제8조(장학금 지급) ① 제6조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법</p>	<p>제8조(장학금 지급) ① ----- -----</p>

에 따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·고등학생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.

제9조(장학생의 선발 등)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-----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

---.

② -----
-----정하고, 장학생 선발기준,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례명 :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견